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광성 의원)

의안 번호	308
----------	-----

발의연월일: 2024년 9월 2일

발 의 자: 김광성 의원

찬 성 자: 남진삼, 이은미, 이창열의원

1. 제안이유

고령화 및 인력난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가의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함.

2. 주요내용

- 가. 운영계획(안 제4조)
- 나. 지원사업(안 제5조)
- 다. 지도·점검(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첨부)
- 다. 입법예고: 2024. 8. 6. ~ 2024. 8. 27.(21일간) 의견 없음.
-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2024. 7. 17. ~ 2024. 7. 30.(14일간), 의견 없음.

[조례안]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가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평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
4.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
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6.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근무지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
7.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및 숙소 지원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담 관리 지원
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
4.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활동을 위한 보험료,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
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
6. 통역·번역 비용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점검) 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 사항 이행 여부
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농수산물 생산의 안정화를 통한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개선 및 복지지원)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경영체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농어업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소비자 등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15. 6. 22.>

제8조(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 인력, 농업 경영, 농지의 소유 및 이용과 농산물의 유통 등을 포함한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산업과 농업 자재산업 등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비용추계서 (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비용발생 요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 나. 관련조문 : 안 제5조(지원사업)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마약검사비, 수송비용, 간식비,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산재 및 의료공제 보험금, 근로자 숙소지원 등 소요예산 항목별 적용

나. 추계 결과

구 분	내 역	예산액 (천원)	비 고
합 계		738,869	
공공형 계절근로 센터 운영 지원	농촌인력 중개센터(공공형) 운영비 지원(307-02)	200,000	국비 100,000 군비 100,000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인권교육, 간식, 수송 및 산재보험 업무대행 수수료, 마약 검사비 및 수송비용	124,100	도비 11,000 군비 113,100
보험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및 의료비(307-06)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및 의료비	177,000	도비 9,000 군비 168,000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101-04) : 기간제 3명	92,769	군비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402-01)	100,000	군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402-02)	45,000	도비 13,500 군비 31,500

다. 재원조달 방안

- 국비(공공형 계절근로 센터운영 지원)
- 도비(농업인력 지원)
- 자체 재원(2025년 당초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이 용 하
연락처	(033) 330 - 1302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711,869	738,869	738,869	738,869	738,869	3,667,345
인건비		92,769	92,769	92,769	92,769	92,769	463,845
일반운영비		97,100	124,100	124,100	124,100	124,100	593,500
공공형 센터 운영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보험금		177,000	177,000	177,000	177,000	177,000	885,000
계절근로자 숙소지원		145,000	145,000	145,000	145,000	145,000	725,000
재원 조달		711,869	738,869	738,869	738,869	738,869	3,667,345
의존 재원	소 계	133,500	133,500	133,500	133,500	133,500	667,500
	보조금(국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0
	보조금(도비)	33,500	33,500	33,500	33,500	33,500	167,500
자체 재원	소 계	578,369	605,369	605,369	605,369	605,369	2,999,845
	군비	578,369	605,369	605,369	605,369	605,369	2,999,845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